



## 보건복지부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(경유)

제목 봉합사 산정기준 관련 해석

---

1. 우리부 보험급여팀-147호 관련입니다.

2. 봉합사는 상대가치점수 개정(2008.1.1.시행 고시 제2007-138호)시 처치 및 수술 등의 해당 상대가치점수에서 동 비용을 차감 반영하여, 별도 산정기로 결정된 바, 해당 수술 및 처치 등의 상대가치점수에서 봉합사 비용이 차감되지 않은 항목은 봉합사를 별도산정 할 수 없음(붙임1 참조).

3. 또한, 봉합사 산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-143호, '07. 12.31)에 의거, 처치 및 수술 이외의 행위(붙임2 참조) 및 제1항 가~라호에 해당하는 처치 및 수술(붙임3 참조)시 봉합사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

붙임 행정해석용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보건사무관 정제혁

보험급여팀장

전결 01/22  
박인석

협조자 보건사무관 이종규

시행 보험급여팀-172 ( 2008.01.22. )  
우 427-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/  
전화 02-2110-6372 전송 02-504-1395 / imdrjj@mohw.go.kr / 공개

접수

( 2008.01.22. )